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30050

[www.kvisionoptical.com](http://www.kvisionoptical.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3.07.22

[sjchoi@davich.com](mailto:sjchoi@davich.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3.13

[케이비전안경(K비전)]

##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02. 04.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1 다비치타워 10층]

[전화번호 : 070-7431-0800]

[팩스번호 : 02-752-6176]

#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1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4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7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8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15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31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32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35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37 |

별첨1. 가맹점 현황

별첨2. 손익계산서

별첨3. 재무상태표

별첨4.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 주 소                        |             |               |             |
|----------------------|---------------------------------------|----------------|----------------------------|-------------|---------------|-------------|
| 주식회사<br>케이비전안경<br>체인 | 가까이 멀리 잘 보이는<br>기능성 안경 전문 체인<br>K비전안경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1 다비치타워 10층 |             |               |             |
|                      | 법인 설립일자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11.12.28                            |                | 2012.01.01                 | 김인규,<br>김봉건 | 070-7431-0800 | 02-752-6176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4761618 |                            | 사업자등록번호     | 104-86-38840  |             |
|                      | 상표권리 이전등록일                            |                | 2006.12.13                 |             |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본인<br>(대표자) | (주)케이비전<br>안경체인 | 가까이 멀리 잘<br>보이는 기능성<br>안경 전문 체인<br>K비전안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1 다비치타워 10층 |               |             |
|             | 사업(경영)기간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07.1.25~현재    |                                          | 김인규,김봉건                    | 070-7431-0800 | 02-752-6176 |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계열회사        | (주)다비치안경체인      | 다비치안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1 다비치타워 9층  |               |             |
|             | 사업(경영)기간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18.07.01.~현재  |                                          | 김인규,김봉건                    | 02-752-6177   | 02-752-6176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6799683                           | 사업자등록번호                    | 764-81-01136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br>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br>기업의 가맹사업<br>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br>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다른 기업이<br>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케이비전안경]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가까이 멀리 잘 보이는<br>기능성 안경 전문 체인<br>K비전안경                                             | 세상을 바라보는 첫 관문인 눈과 안경을 모티브<br>로 안경에 대한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br>의미입니다 |
| 상 호      | K비전안경 OO점                                                                         | 해당지역의 지역명 또는 인식된 지역 통칭명                                         |
| 상표(서비스표) |  | 상표 등록번호 제41-0385972-0000                                        |
| 광 고      |  | 가맹기간동안 케이비전안경의 로고를 매장인테리어 및 매장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 총자산       | 총자본       | 총부채       | 매출액       | 매출<br>원가  | 매출<br>총이익 | 영업<br>이익 | 경상<br>이익 | 당기<br>순이익 |
|-------|----|-----------|-----------|-----------|-----------|-----------|-----------|----------|----------|-----------|
| 2021년 | 법인 | 2,974,044 | 2,207,037 | 767,007   | 5,854,410 | 4,791,549 | 1,062,861 | 341,971  | 368,069  | 303,250   |
| 2022년 | 법인 | 3,519,469 | 2,581,952 | 937,516   | 6,420,703 | 5,167,345 | 1,253,358 | 443,576  | 458,557  | 374,915   |
| 2023년 | 법인 | 3,940,905 | 2,929,210 | 1,011,699 | 6,272,029 | 5,152,181 | 1,119,847 | 393,979  | 420,388  | 347,257   |

위 근거자료는 별첨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와 같습니다.

- 표준손익계산서: 별첨2
-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별첨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sup>③</sup>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sup>④</sup>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관련임원          | 김인규 | 대표이사 | 2003.1.~현재       | (주)다비치안경체인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     |      | 2016.4.22.~현재    | (주)케이비전안경체인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 김봉건 | 대표이사 | 2018.01.01 ~ 현재  | (주)케이비전안경체인 대표이사 | 경영총괄  |
|                   |     |      | 2018.02.22. ~ 현재 | (주)다비치안경체인 상임대표  | 경영총괄  |
| 가맹사업비관련 임원        | 박숙점 | 사내이사 | 2022.4.07 ~ 현재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2      | 1   | 3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특수관계인(관계회사) | (주)다비치안경체인 |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경영 | 2018.7.~현재 | 다비치안경<br>(등록번호: 20080100147)<br>이라는 브랜드의<br>안경체인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등록<br>만료일  |
|--------------|--------------|-------------------------------|------------------------------------------|-----------------|------------|
| 케이비전안경(상표)   | 상표           | 2016.4.1. 출원<br>2017.4.17. 등록 | 출원 제40-2016-23989<br>등록 제40-1246658-0000 | 주식회사<br>다비치안경체인 | 2027.04.17 |
| 케이비전안경(서비스표) | 간판,매장내 부인테리어 | 2016.4.1. 출원<br>2017.2.3. 등록  | 출원 제41-2016-15469<br>등록 제41-0385972-0000 | 주식회사<br>다비치안경체인 | 2027.02.03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7년 1월 2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해당없음)

2. 케이비전안경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안경만들기체인       | 안경만들기  | 김인규      | 2006.12~2011.12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87번지 남산쌍용플래티넘2층204~6 |
| (주)안경만들기      | 안경만들기  | 김인규      | 2012.1. ~ 2016.4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87번지 남산쌍용플래티넘2층204~6 |
|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 케이비전안경 | 김인규, 김봉건 | 2016.4~현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91 다비치타워 10층          |

3. 케이비전안경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케이비전안경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안경  | 안경, 콘택트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케이비전안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42         | 42   | 0    | 41         | 41   | 0    | 38         | 38   | 0    |
| 서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3          | 3    | 0    | 2          | 2    | 0    | 1          | 1    | 0    |
| 인천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광주 | 1          | 1    | 0    | 2          | 2    | 0    | 2          | 2    | 0    |
| 대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4          | 4    | 0    | 3          | 3    | 0    | 3          | 3    | 0    |
| 경기 | 8          | 8    | 0    | 8          | 8    | 0    | 8          | 8    | 0    |
| 강원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충북 | 1          | 1    | 0    | 1          | 1    | 0    | 1          | 1    | 0    |
| 충남 | 3          | 3    | 0    | 3          | 3    | 0    | 3          | 3    | 0    |
| 전북 | 5          | 5    | 0    | 4          | 4    | 0    | 3          | 3    | 0    |
| 전남 | 2          | 2    | 0    | 2          | 2    | 0    | 2          | 2    | 0    |
| 경북 | 5          | 5    | 0    | 6          | 6    | 0    | 6          | 6    | 0    |
| 경남 | 8          | 8    | 0    | 8          | 8    | 0    | 7          | 7    | 0    |
| 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바로 전 3년간 [케이비전안경]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증감 |
|------|----|-------|-------|-------|-------|----|----|
| 2021 | 43 | 1     |       | 2     | 1     | 42 | -1 |
| 2022 | 42 | 2     |       | 3     |       | 41 | -1 |
| 2023 | 41 | 0     |       | 3     |       | 38 | -3 |

[케이비전안경]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1을 확인하십시오.<sup>④</sup>

#### 6. [케이비전안경]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케이비전안경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특수관계인<br>(계열회사) | (주)다비치<br>안경체인 | 다비치<br>안경 | 20080100147   | 안경<br>프랜차이즈 | 279/0      | 283/0      | 292/0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케이비전 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산정 기준 : 가맹점 전산 포스 데이터 기준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비전ERP라는 영업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상에 각 매장별로 고객이 방문하면 판매기록을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추정매출은 시스템상의 각 가맹 매장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장의 규모는 결국 연평균 매출규모와 상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매장 경영방침,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케이비전 안경체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영업기간 |
|----|------------|--------|
|----|------------|--------|

|      |    |               |
|------|----|---------------|
| 2023 | 38 | 3,473일(9년 5월)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케이비전 안경체인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 총판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케이비전안경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P 27쪽~ 28쪽을 참고 하십시오.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br>(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비공개) | 85,342                     | 25,603 | 59,740 |       |
| 온라인광고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       |       |       |       |       |
|--|-------|-------|-------|-------|-------|-------|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제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E-Biz 사업부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 02-2002-5636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케이비전안경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대한 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항목 9항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은행(우리은행)을 통하여 가맹비 예치금제(에스트로 가상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법률               | 위반법령 | 위반내용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해당사항 없음.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해당사항 없음. |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해당사항 없음.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케이비전안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금 일금 10,000천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매장영업개시 준비에 필요한 점포의 임대비용, 간판설치비용, 인테리어비용, 상품 구매 비용, 조제 및 검사장비, 인테리어 집기 등 제반일체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전액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 구분          | 금액         |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10,000 ] |       | 계약일부<br>익일한 |                      |                                              |                          |
| 가입비         | 2,000      |       | 상동          | 영업 개시 이전까지<br>계약 해지시 | 인테리어 공사시작 이후는<br>미반환                         |                          |
| 컨설팅비        | 2,000      |       | 상동          | 반환안됨                 | 가맹 계약시 까지 영업정<br>책 사항 설명, 인건비 및<br>기타경비 소요됨. |                          |
| 교육비         | 개업<br>교육   | 2,000 | 상동          | 교육시작 이전에<br>계약 해지시   | 교육이후 미 반환                                    | 교육이 시작<br>되면 반환되<br>지 않음 |
|             | 전문가<br>교육  | 1,000 |             |                      |                                              |                          |
| 상권분석비       | 1,000      |       | 상동          | 반환 안 됨               | 가맹계약 시까지 인건비<br>및 기타경비 소요됨.                  |                          |
| 오픈준비지원<br>비 | 2,000      |       | 상동          | 영업 개시 이전까지<br>계약 해지  | 오픈업무 투입이후                                    |                          |

\* 컨설팅비와 상권 분석비는 매장 오픈과 상관없이 소요되는 비용 인바 가맹점 오픈 전 가맹계약이  
해지 시에도 반환이 될 수 없음

2) 케이비전안경체인은 가맹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0,000]천원  
(부가세 제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
|---------|--------------------|
| 합계      | 10,000             |
| 가입비     | 2,000              |
| 컨설팅비    | 2,000              |
| 교육비     | 3,000              |
| 상권분석비   | 1,000              |
| 오픈준비지원비 |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sup>①</sup>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117,490~168,490]                                 |                             |                              |               |                                     |
| 인테리어<br>(점포<br>내장공사) | 협력업체<br>미건<br>외1개업체 | 30평 기준 90,000<br>40평 기준 116,000<br>50평 기준 140,000 | 33㎡ 기준<br>3.3㎡당 :<br>3,000  | 내부 인테리어<br>공사 완료 후<br>30일 이내 | 공사 전<br>계약 취소 | 30평 미만의<br>경우 비용에<br>차이가 생길<br>수 있음 |
| 간판 제작<br>및 부착        | 협력업체                | 20,000 ~ 60,000                                   |                             | 공사 완료 후<br>30일 이내            | 공사 전<br>계약 취소 | 현장사정에<br>따라 차이가<br>있음               |
| *검사기                 | 협력업체                | 3,100 ~ 50,000                                    |                             | 매장 오픈<br>전 구비                | 설치 전<br>계약 취소 | 종류에 따라<br>차이 있음                     |
| *옥습기                 | 협력업체                | 1,300 ~ 50,000                                    |                             |                              |               | 종류에 따라<br>차이 있음                     |
| *공구세트                | 협력업체                | 550                                               |                             |                              |               |                                     |
| *컴퓨터장비<br>일체         | 자체구매                | 4,600                                             |                             |                              |               | 5대 기준                               |
| *렌즈미터                | 협력업체                | 2,640~4,000                                       |                             |                              |               | 2대 기준                               |
| 바코드 프린터              | 자체구매                | 700                                               |                             |                              |               |                                     |

위 표의 \*로 표시된 항목은 가맹점 점주의 자유구매에 따라 구매업체 및 수량을 결정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sup>①</sup>             | 선정 기준 <sup>②</sup>                                                                                                                                                     |
|--------------------------------|------------------------------------------------------------------------------------------------------------------------------------------------------------------------|
| 당사 상관계발팀<br>(전화:070-7431-0800)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br>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br>※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br>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
| 종업원    | 2년제 대졸이상 안경광학과 졸업 | 2년제 대졸이상 안경광학과 졸업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 비품은 자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영업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 50%이상 찬성 시 추가적으로 영업 중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도 광고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
| 광고 분담금     | 주식회사<br>케이비전안경 | 총광고비/현<br>재영업중인<br>가맹점수 | 익월 15일                     | 집행<br>취소시 | 일괄 행사<br>진행 후             |                               |
| 월<br>정기지급금 | 주식회사<br>케이비전안경 | 월 400                   | 해당 월 15일                   | 반환 안됨     | 상호사용 및<br>컨설팅,ERP사<br>용비용 | 매월지급                          |
| 지연이자       | 주식회사<br>케이비전안경 | 연12%                    | 지급기일의<br>다음날부터<br>지급하는 날까지 |           |                           | 월계속가맹금의<br>지급기한을 경과<br>했을시 부담 |
| 점포환경<br>개선 | 협력업체           | 가맹본부분담<br>비용을제외한<br>나머지 |                            |           |                           | 자발적 환경<br>개선시는 가맹점<br>부담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인테리어 유지 보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I 정책의 준수 및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하여 청결한 매장 인테리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매장 인테리어 관련하여 통일된 이미지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토록 합니다. 이외의 인테리어 개선이나 리뉴얼 및 이전 확장에 대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판단하여 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뉴얼이나 이전 확장을 진행 할 시에는 가맹 본부의 필수 승인을 받고, 통일된 시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4) 멤버십 포인트 부담

기존 고객이 타 가맹매장에서 사용한 포인트는 포인트를 발행한 가맹점과 실사용 가맹매장을 5:5로 나누어서 정산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해지 매장에서 발행한 포인트를 고객이 사용 시는 사용매장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사용매장에서 고객이 포인트 사용에 따른 추가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연유하나 가맹본부에서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 전체 금액 중 0.05%를 일부 부담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전략정책 이행여부<br>경영지도 | - 매장의 통일된 매장 운영 준수 여부(비전ERP 입력, 멤버십 고객카드 발행 등)<br>-매장 경영 상태와 고객응대기법등 점검(매장재고관리,회계,매출관리) | -분기별 1회<br><br>-수시 또는<br>가맹점 요청시 | 문의: 컨설팅팀<br>(070-7431-0800) |
| 경영자회의 참석여부        | 월 1회 경영자회의 참석여부                                                                         | 월 1회                             | 문의: 컨설팅팀<br>(070-7431-0800)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



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해당 사실을 양도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알려야 하며 양도인과의 체결된 가맹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가맹계약만료 잔여기간만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의 가맹사업자로 운영을 희망할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 잔여 기간 만큼의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가맹금에서 상권분석비, 오픈준비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의 가맹점사업자로 신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와 같이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케이비전안경체인에 최초 가맹금인 10,000천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운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양도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가맹점 양도·양수에 관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리고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다.
- ② 양도인과 양수인은 직접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필요시 가맹본부에서 입회할 수 있다.
- ③ 양수인은 가맹점 양수계약과 더불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④ 양수자는 해당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납부한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 소유의 모든 상표권 관련된 어떠한 식별기호도 폐기 및 철거하여야 하며 케이비전안경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계약 종료시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한 반품은 당사는 전혀 인정치 아니한다.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고객관리용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적된 고객정보 중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고객정보만을 추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고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및 해결한다는 내용의 약속서를 가맹본부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고객데이터상의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가맹본부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상기 고객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영업비밀 엄수의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협력업체와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해야 할 품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품목 중 당사의 PB 상품 판매비율은 가맹점 등급평가 기준 중 한 가지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에 내용은 일부이고 [#별첨 4]에 모든 업체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 관련 업체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필히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본부에 사전 등록된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 | 좌측에 기재된 조건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시 : 책임통보문 발송 및 개별거래액의 20% 징수<br>2회 위반시 : 계약해지 예정통보문 발송 및 개별거래액의 30% 징수<br>3회 이상 위반시 : 최초 1회 통보 후 2월 이상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 가능<br>※ 가맹본부가 판단하여 개별거래가 의심될 시 요청년도 가맹점 부가세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요청 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안경 2,4,6 판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안경 246판매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구색을 준비하여 고객들에게 구매선택의 폭을 주기위한 영업 정책입니다.]

또한 안경246판매는 다양한 가격대를 의미하는 고객가치 철학의 슬로건의 개념을 가지며, 모든 고객이 매장 방문 시 저가에서 고가로 구매의향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정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케이비전의 판매 가격 전략입니다.

안경246만원 가격대의 고객 표지가격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책정하는 별도가격대의 상품도 표시라벨대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 2-2) 안경 판매가격의 정액정찰제의 시행(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각 가맹점은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도 안경246만원 정찰가격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된 가격라벨을 표시대로 공정하게 동일한 판매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객신뢰의 확보를 통한 영업경쟁력 확보의 일환입니다.

2-3) 가맹본부는 안경 246만원판매 전략 시행을 권장하며, 가맹점이 부득이 이를 변경하고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을 인정한다.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sup>②</sup>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안경 또는 선글라스 및 콘택트 렌즈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케이비전안경                   | 다비치안경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sup>①</sup>                                                     | 설정방법 <sup>②</sup>              |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사유                     |
|------------------------------------------------------------------------|--------------------------------|----------|---------------------------|
|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br>인구 2만명 당 1점포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 가능       | 쌍방향합의에 의한<br>재계약시<br>변경가능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br>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br>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br>영업지역으로 인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br>(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          |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케이비전안경체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케이비전안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sup>②</sup> |
| 2023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
|------|---------------------------|--------------------------|
| 2023 | 10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케이비전안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및 월정 정기지급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 34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 34조   |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 34조   |
| ○ 가맹점 사업자가 매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방침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 34조   |
|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 34조   |
| ○ 계약서상에 규정된 각종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 34조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1) 감맹점 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해당조항       | 위반 구분 | 통보                     | 조치                                                                       |
|------------|-------|------------------------|--------------------------------------------------------------------------|
| 본 항<br>각 호 | 최초 위반 | 1차 공문 발송<br>위반사실 통보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주기적 소통 / 보수교육 이수<br>▶ 시정요구 및 개선의 노력            |
|            | 2차 위반 | 2차 고문발송<br>계약 해지 예정 통보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주기적 소통 / 보수교육 이수<br>▶ 시정요구 및 개선의 노력            |
|            | 3차 위반 | 3차 공문발송<br>계약 해지 통보    | ▶ 최초 1차 통보 후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 예정 통보<br>▶ 회생계획서 제출시 검토 후 해지 여부 결정 |
|            | 회생계획서 | ▶ 유예 결정                | ▶ 회생계획서를 준수하였을 경우                                                        |
|            |       | ▶ 계약 해지 결정             | ▶ 계약 해지                                                                  |

1. 제4조(계약 당사자의 지위) 제3항
2. 제9조(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제3항
3. 제13조(점포의 설비 및 기기) 제1항 제2호 제4호, 제2항 각 호
4. 제17조(계약이행보증금)
5.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4항, 제5항, 제6항
6. 제20조(광고·판촉 등) 제1항 제6호, / 제2항 제3호
7. 제24조(영업 및 영업정책 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8. 제25조(전략정책)
9. 제27조(전산 및 고객데이터 관련)
10. 제30조(영업비밀의 엄수의무)
11. 제32조(의결 정족수)
12. 제33조(계약의 변경) 제2항
13. 이 외 본 계약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4-2) 고객 클레임 발생 등 이 가맹점의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 아래 표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해당조항       | 위반 구분 | 통보                     | 조치                                                                         |
|------------|-------|------------------------|----------------------------------------------------------------------------|
| 본 항<br>각 호 | 최초 위반 | 1차 공문 발송<br>위반사실 통보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안경사의 1일간 고객 서비스 교육 이수                 |
|            | 2차 위반 | 2차 고문발송<br>계약 해지 예정 통보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안경사의 1박 2일 고객 서비스 교육 이수 및 시정계획안 작성 제출 |
|            | 3차 위반 | 3차 공문발송<br>계약 해지 통보    | ▶ 최초 1차 통보 후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 예정 통보<br>▶ 회생계획서 검토                  |
|            | 회생계획서 | ▶ 유예 결정                | ▶ 회생계획서를 준수하였을 경우                                                          |
|            |       | ▶ 계약 해지 결정             | ▶ 회생계획서 미준수하였을 경우                                                          |

4-3)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위약의 별로 해당하는 위약금을 징수한 후 각각 아래 표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 21조(상품 등 공급 및 구매) 제 1항 제1호 / 제 2항 제1호 제2호 제3호
2. 제 29조(가맹점의 양도) 제1항 제1호
3. 제 31조(경업금지)

| 해당조항              | 위반 구분 | 통보                            | 위약금                            | 조치                                                                        |
|-------------------|-------|-------------------------------|--------------------------------|---------------------------------------------------------------------------|
| 본 항<br>제 1항       | 최초 위반 | 1차 공문 발송<br>위반사실 통보<br>위약금 청구 | 개별거래<br>총액의 30%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위약의 별로 위약금 청구<br>▶ 주기적 소통 / 보수교육 이수<br>▶ 시정 요구  |
|                   | 2차 위반 | 2차 고문발송<br>위반사실 통보<br>위약금 청구  | 개발거래<br>총액의 50%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위약의 별로 위약금 청구<br>▶ 보수교육 입소<br>▶ 회생계획서 검토 후 해지결정 |
|                   | 3차 위반 | 3차 공문발송<br>계약 해지 통보           | -                              | ▶ 최초 1차 통보 후 2개월 이상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계약 해지 예정 통보                               |
| 본 항<br>제2호<br>제3호 | 최초발생  | 1차 공문발송<br>위반사실 통보<br>위약금 청구  | 최근 6개월간<br>월 평균 매출의<br>100의 50 | ▶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내용 통보<br>▶ 위약의 별로 위약금 청구<br>▶ 회생계획서 검토 후 해지 결정             |
|                   | 미 시정  | 2차 공문 발송<br>계약해지 통보           | -                              | ▶ 즉시 계약해지 사항<br>▶ 계약 해지                                                   |

4-4)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으로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1. 제 16조(월정기지급금)
2. 제22조(상품 등 대금 결제)
3. 제24조(영업 및 영업정책 등)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4. 제29조(가맹점의 양도) 제1항 제1호

단, 위약의 벌로 본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31조(경업금지)

단, 위약의 벌로 본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약금을 가맹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34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제3항

7. 제35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제3항

8. 본조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유예기간 등 및 가맹본부와의 개선 노력을 통하여 시정되었으나 1년(계약갱신이나 연장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9. 본 조 제3항 위약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0. 가맹사업법 제 14조(가맹계약해제의 제한)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충족 되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                                           |

|                                                                                             |
|---------------------------------------------------------------------------------------------|
| 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수정 및 변동사항은 별지를 첨부함으로써 동일한 효력을 갖다 | 부칙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및 영업 관리시스템 또는 그룹웨어 공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및 동의 → 수정 계약 효력 발생 | 수정 계약서(안)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서면동의를 있기 전에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가맹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특별 손해배상으로 당사에 일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br>체인영업팀<br>(070-7431-0800)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입비, 컨설팅비, 전산설치 및 전산교육비 및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

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승인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
| 대리 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행사자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귀하가 케이비전안경원과 동일한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영위(동업, 지분투자 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사전에 필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반 시는 위약금 일금오천만원(W50,000,000)을 특별배상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안경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체인본부<br>(070-7430-0080) |

●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케이비전안경체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0:00~21:00(11시간) | 설날, 추석 당일 휴무 | 문의: 체인본부<br>(070-7430-008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1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안경사 면허증 소지자)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복장(2항목)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점검    | 본사 컨설팅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수시점검    | 본사 컨설팅팀 |    |
| 품질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점검    | 본사 컨설팅팀 |    |
| 고객 경영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시뮬레이션 평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서명 | 수시점검    | 본사 컨설팅팀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관리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본 케이비전안경 체인본부와 귀하가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주)케이비전안경 인지도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도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비고 <sup>④</sup>                  |
|----------------|---------------------|---------------------------------------|-----------------------------------------------------------------------------------------|---------------------------------------------------------|----------------------------------|
| 광고<br>전체<br>행사 | 상품광고                | 사안별로<br>결정(30%)                       | 70%(광고비/<br>현재 영업중인<br>가맹점 수)                                                           | 전체 가맹점주의 2/3이상<br>참석과 참석자의 50%<br>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전국 케이블광고,<br>전국 라디오광고,<br>온라인 광고 |
|                | 케이블전<br>안경<br>체인 광고 | 사안별로<br>결정(30%)                       | 70%(광고비/<br>현재 영업중인<br>가맹점 수)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부담                                  | 없음                                                                                      | 본사에서 진행                                                 |                                  |
| 개별<br>행사       | 가맹점 사업자 전액 부담       |                                       |                                                                                         | 가맹점 사업자의 판단에<br>의해 진행                                   |                                  |
| 멤버십<br>카드      |                     | 포인트적립<br>매장이<br>폐점한<br>경우 0.05%<br>부담 | 포인트 적립 매장과<br>포인트 사용 매장이<br>5:5로 분담<br>포인트 적립 매장이<br>폐점한 경우 포인트<br>사용 매장에서<br>99.95% 부담 | 별도 절차 없음<br>(고객의<br>포인트사용시가맹본부에서<br>정산 후 가맹점에 비용<br>청구) | 서비스 등의 종료시<br>까지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타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협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 조항은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계약서 내용에서 위의 사항을 충족하는 내용을 발 취함.

----- 아 래 -----

### 제9조 (가맹점 운영권과 의무 부여)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영업표지, CI 및 지적재산 등을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용도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21조 (상품 등 공급 및 구매)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등의 구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인 상표권 보호와 상품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필수적인 직접상품과 전문기기 등을 공급 받아야 한다. 일반용품 및 비전문용품, 사무용품 등은 그렇지 아니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 및 타 안경매장과 개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개별거래가 의심될 시 가맹본부는 요청년도 가맹점 부가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공급받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및 판매할 수 없다.
4. 공급가격 및 판매 권장가격 변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시행 5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공급가격 변동 시 가맹점사업자의 보유 재고분에 대한 가격차액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24조 (영업 및 영업정책 등)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한다.

### 제30조 (영업비밀의 엄수의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엄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상 혹은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기술 및 영업비밀,판매정책 등, 지적자산을 제3자에게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영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및 유출할 수 없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해지 및 종료 시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수록된 서면자료, 전산자료, 음성 녹음자료, 화상자료, 홍보자료, 각종 매뉴얼 및 경영지도 등에 관한 자료등을 가맹본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중에 사용하였던 가맹본부의 지적재산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라도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경업을 할 수 없다.

- ①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의 경영 또는 지분을 참여, 동업 등을 하는 행위
- ② 타 상호로 본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 또는 지분을 참여, 동업 등을 하는 행위

### 제35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해지 요청 등)

- ②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정기지급금과 가맹본부 수익구조인 상품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의 전 분기 상품 매입액 기준으로 적용한 손해배상액을 가맹본부에게 위약의 별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그 한도는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한다. 이는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의 보호와 노하우 전수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 보존과 영업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입안한 위약조항의 성격을 갖는다.

### 제37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③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케이비전 안경원의 간판 및 기타 케이비전 상호, 상표, 로고, 심벌 등 일체의 영업표지등은 자비로 철거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임의로 상호 및 상표 등, 영업표지 일체의 케이비전 표식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손해와 제반 비용 및 모든 법적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본 조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의 별로써 해약일 익일로 부터 철거완료일까지 케이비전 안경원의 영업표지 등의 일일 사용료로 직전 6개월간의 1일 평균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의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특약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5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50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9~48     | 비용없음                  |
| 점포개발 및<br>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가맹금에 포함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br>- 계약서 제공                                      | D-47~45     | 비용없음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 42~40    |                       |
| 가맹금 예치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9~38(1일) | 11,00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7~35(3일) | 인테리어 비용포함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4~32(3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0~5(25일) | 평당 3,300<br>평수에 따라 변경 |
| 간판공사              | - 공사 실시                                                  | D-30~5(25일) | 매장 크기에 따라<br>변경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5~22(3일) | 가맹금에 포함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에 따른 장비,비품구매,                                    | D-7(5일)     |                       |

귀하는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 14일의 숙고기간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케이비전안경체인”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내역                                                                                                      |
|---------------|-----------------------------------------------------------------------------------------------------------|
| 점포환경개선<br>사유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br>부담    | ○간판교체 비용<br>○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

|                     |                                                                                                                                                                                                                                                                                                                                                                                                                                      |
|---------------------|--------------------------------------------------------------------------------------------------------------------------------------------------------------------------------------------------------------------------------------------------------------------------------------------------------------------------------------------------------------------------------------------------------------------------------------|
| 비용항목②               |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br>(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개선을 강요하거나,권장 및 요구를 하였을 경우)                                                                                                                                                                                                                                                                                                                      |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③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br>(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개선을 강요하거나,권장 및 요구를 하였을 경우)                                                                                                                                                                                                                                                                                                             |
| 지급절차④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br>(○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분할지급 시 절차><br>○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br>(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br>제외사유⑤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br>○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점포 환경개선을 할 경우는 가맹본부는 부담의 의무가 없다.<br>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화재 등)로 인한 통일성의 심각한 훼손시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의 의무가 없다.                                                                                                                                                                                                 |
| 비고                  |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및 필요에 의한 특별 경영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sup>①</sup>                                                      | 절 차 <sup>②</sup>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가 가맹점에<br>특별<br>경영컨설팅<br>요청시 | 상품 교육,<br>판매 방법 교육,<br>경영관리 교육,<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현장경영컨설팅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지정한 전문 인력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사업자와<br>협의 | 문의: 컨설팅팀<br>(070-7431-0800)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br>경영 컨설팅             | 상품 교육,<br>판매 방법 교육,<br>경영관리 교육,<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컨설팅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br>→ 가맹본부는<br>경영지도계획서(경영컨설팅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컨설팅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컨설팅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컨설팅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전액 부담      | 문의: 컨설팅팀<br>(070-7431-0800)     |
| 일반<br>경영지도<br>컨설팅                    | 상품 교육,<br>판매 방법 교육,<br>경영관리 교육,<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컨설팅   | 정기 방문을 통한 일반 경영<br>컨설팅 실시                                                                                                                                                      | 가맹본부<br>전액 부담     | 문의 :<br>컨설팅팀<br>(070-7431-0800)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 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조기안정화<br>결제분할 | 가맹점 오픈시<br>조기안정화를 위한<br>본사PB안경렌즈입점상품분할 | 신규 오픈                      | 10개월      | 본사 PB 여벌 안경렌즈<br>입점분할10개월                                                 |    |
| 신규<br>오픈지원    | 가맹점 신규 오픈매장<br>오픈업무지원                  | 신규 오픈                      | 6일+1일     | 가맹점 컨설팅 직원이 오픈 시<br>6일 동안 오픈업무 지원<br>오픈 후 1달 후 추가 방문하여<br>결과 분석 및 홍보전략 구성 |    |
| 매출 부진<br>경영지원 | 매출 부진 가맹점<br>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 전년대비<br>매출 하락 20%<br>이상 매장 | 가맹점<br>협의 | 컨설팅 제공<br>(가맹점홍보전략방향)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케이비전안경체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케이비전안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맹금 10,000천원(부가세제외) 중 3,000천원 (개업교육 2,000천원, 전문가교육 1,000천원)이 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비용입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부가세제외) | 비고        |
|-------|------|------------------|-----------|
| 개업 교육 | 3일   | 2,0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전문 교육 | 1일   | 1,000            | 매년 필수적 이수 |

\* 개업, 신규, 전문가 교육비용은 신규 가맹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 제18 에 규정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케이비전 안경원의 일관된 영업정책 및 대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sup>③</sup>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070-7431-08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mailto: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비전안경]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